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행복교육의 중심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 · 해지현황 보고

2020.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제출연월일: 2020. 9.

제출자: 대전광역시교육감

1. 보고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 제4조(업무협약의 추진) 및 제5조(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1월~6월)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해지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의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전수 및 내용 : 총 10 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7건

주 관 부 서	협 약 일	협 약 명	협 약 기관
교육정책과	2020.2.25.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돌봄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유성구평생학습원
	2020.5.26.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관련 업무협약	우송대,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
유초등교육과	2020.6.30.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국회도서관
과학직업정보과	2020.2.21.	AI·SW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배재대학교
체육예술건강과	2020.1.29.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참여 예술단체 업무협약	지역 예술단체(10개)
학생생활교육과	2020.1.21.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
	2020.1.21.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광역시의사회

2) 지역교육지원청 1건

주 관 부 서	협 약 일	협 약 명	협 약 기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2020.6.1.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업무협약	대전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서구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직속기관 2건

주 관 부 서	협 약 일	협 약 명	협 약 기 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19.12.26.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업무협약	진원작은도서관, 만년돌작은도서관
	2020.2.17.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업무협약	목동마미돌작은도서관

나.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수 및 내용 : 총 4 건

주 관 부 서	해 지 일	협 약 명	협 약 기 관
중등교육과	2020.5.1.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육군발전협회 대전세종지부
과학직업정보과	2020.1.23.	고교·대학연계 R&E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선문대학교
	2020.4.6.	지역 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5개 관계기관 협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 국립중앙과학관, 경주교육지원청
대전교육정보원	2020.4.5.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카이스트 융합교육 연구센터

붙임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 보고서 14부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서



교육정책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2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지역돌봄기관 과의 공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유성구 평생학습원)	2020.2.25.	2020.2.25. ~ 2020.12.31.	<교육청> - 공동 돌봄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 사업 홍보 및 참여(학교)기관 모집 - 강사 관리, 수당 지급 등 예산집행 <유성구 평생학습원> - 지역돌봄기관 및 초등돌봄교실 연계 심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강사 인력 발굴 및 연계 - 강사 모집 및 체계적인 교육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관련 업무협약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한밭대학교)	2020.5.26.	2020.5.26. ~ 해지시까지	-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 -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불임 : 협약서 5부

2020 방과후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돌봄프로그램 운영 추진 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유성구 평생학습원은 2020 방과후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돌봄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살린 협업으로 방과후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돌봄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및 협의이행)

1. 양 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양 기관 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조 (협력분야)

각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협의를 거쳐 정한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

1.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돌봄프로그램 계획수립 · 운영
2.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적극적 홍보로 참여기관 모집 및 학생 참여율 제고
3. 강사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 사업 홍보 · 운영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 유성구 평생학습원 >

1. 지역돌봄기관 및 초등돌봄교실 연계 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지역의 우수한 강사 인력 발굴 및 연계
3. 향후 프로그램 확대 및 안정된 운영을 위한 강사모집 및 체계적인 교육 실시

제4조 (효력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 (협의조정)

본 협약서에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및 변경)

-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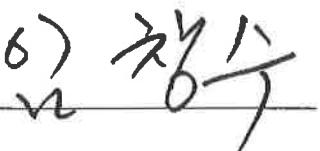
제7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



유성구 평생학습원

원장 이하경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 우송대학교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우송대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한다.

제2조 (협력사항)

각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다.

- ① 지역 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중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조 협력 사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은 각 체결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

-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5. 26.



대전광역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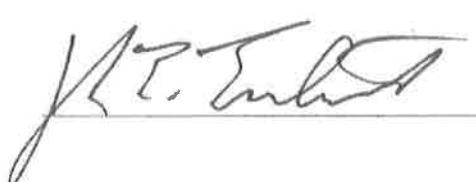
교육감 설동호



우 송 대 학 교

총장 존 앤디 컷

설동호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 충남대학교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충남대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한다.

제2조 (협력사항)

각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다.

- ①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중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조 협력 사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은 각 체결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

-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5. 2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

설동호

이진숙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 KAIST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KAIST는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한다.

제2조 (협력사항)

각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다.

- ①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중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조 협력 사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은 각 체결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

-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5. 2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총장 신성철

설동호

Seon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 한밭대학교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한밭대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한다.

제2조 (협력사항)

각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다.

- ①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중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조 협력 사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은 각 체결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

-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5. 2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한국대학교
총장 최병우

설동호

최병우

유초등교육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1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국회도서관)	2020.6.30.	2020.6.30. ~ 2023.6.30. (합의 후 기간연장)	-국회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협력 -사서교사 등의 직무연수 협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붙임 : 협약서 1부

대전광역시교육청 · 국회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국회도서관은 양 기관의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국회도서관'이 지식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 등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협약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법령과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한다.
2. 협력사항 실천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며, 세부이행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 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이를 더욱 발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DB 등 자료 이용 확대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의 직무연수 지원
3.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4. 이외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제4조(저작권) 양 기관은 제공받은 지식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분담한다.

제7조(협약서 개정) 이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및 유효기간) 이 협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위와 같이 업무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설동호

현진권

과학직업정보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1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AI·SW 인재육성 을 위한 업무협약 (배재대학교)	2020.2.21.	2020.2.21. ~ 2023.2.20. (합의 후 기간연장)	- 양 기관의 교류와 자원 활용에 적극 협조 - 배재대학교 SW 중심대학 사업단이 시행하는 각종 AI·SW 교육 및 행사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 협력 - 관내 초·중등학교 AI·SW 교육의 안정적 정착 지원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붙임 : 협약서 1부

배재대학교 &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약서

배재대학교 &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양 기관)은 미래 AI·SW인재 육성을 위하여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의 AI·SW교육 활성화 및 AI·SW 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 교류,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협력분야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역량의 교류 및 자원 활용에 적극 협조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AI·SW교육 활성화를 위해 배재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이 시행하는 각종 AI·SW교육 및 관련 행사에 대해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3. 배재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은 AI·SW필수교육이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4. 기타 협력사항의 추가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근거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년간 유지된다.

제5조(비용부담) 협력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분담한다.

제6조(협의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배재대학
총장 김선재

설동호 김선재

체육예술건강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1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무대」 참여 예술 단체 업무협약 (지역 예술단체 10개팀)	2020.1.29.	2020.3.1. ~ 20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의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서 전문성 있는 예술프로그램을 학생 수준에 맞게 공연-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예술무대 프로그램 구성-협약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지역 예술 단체 10개팀 대표<ul style="list-style-type: none">1.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2.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3. 림스타악기앙상블4. 반 브라스5. 퓨전페커션밴드 POLY6. 다현악회7. 퓨전국악그룹 풍류8. 아이빅 밴드9. 협동조합 뮤즈10. 에듀비전 코리아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불임 : 협약서 10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 간의 업무 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은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주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예술문화대학협동조합
대표

변 상 형
변상형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간의 업무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주진 방법)

- ① 학교의 회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튜스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제스튜스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튜스
대표

최 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팀스타악기앙상을 간의 업무협약서

- 사 업 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 약 기 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팀스타악기앙상을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팀스타악기앙상을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팀스타악기앙상블은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운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립스타악기앙상블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립스타악기앙상블 대표

고 길 영

2020. 1. 29.



대전광역시교육청과 Van Brass 간의 업무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Van Brass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Van Brass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Van Brass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밀접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Van Brass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V
BRASS
N

Van Brass 대표

권 용 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퍼커션밴드 POLY 간의
업무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퍼커션밴드 POLY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퍼커션밴드 POLY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퍼커션밴드 POLY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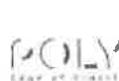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퓨전퍼커션밴드 POLY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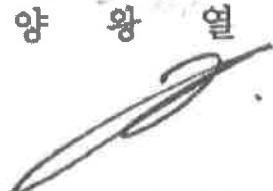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퓨전퍼커션밴드 POLY
대표

양 왕 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다현악회 간의 업무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다현악회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다현악회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다현악회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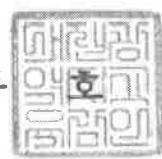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다현악회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한국어

다현악회 대표

이 옥 순
이 옥 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국악그룹 풍류 간의
업무 협약서

- 사 업 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 약 기 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퓨전국악그룹 풍류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국악그룹 풍류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퓨전국악그룹 풍류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회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퓨전국악그룹 풍류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퓨전국악그룹 풍류
대표

김 영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아이빅 밴드 간의 업무 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아이빅 밴드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아이빅 밴드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아이빅 밴드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회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아이빅 밴드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아이빅 밴드 대표

성 철 모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동조합 뮤즈 간의

업무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동조합 뮤즈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동조합 뮤즈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동조합 뮤즈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운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동조합 뮤즈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muse 협동조합 뮤즈 대표

정 환 청

정환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에듀비전 코리아 간의 업무협약서

- 사업명: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 협약기간: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협약당사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에듀비전 코리아 대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에듀비전 코리아 상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에듀비전 코리아는 「2020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① 배정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무대를 성실히 제공한다.
- ② 예술무대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술체험과 예술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학교급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추진 방법)

- ① 학교의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단체를 배정한다.
- ② 예술무대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단체와 학교가 직접 협의한다.
- ③ 예술무대가 소요하는 비용은 출연 인원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금150만원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에듀비전 코리아의 대표자는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④ Eduvision 에듀비전 코리아 대표

박 춘 자

학생생활교육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2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대전지방 변호사회)	2020.1.21.	2020.1.21. ~ 2022.1.20. (합의 후 기간연장)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인력 지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인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부 지원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대전광역시 의사회)	2020.1.21.	2020.1.21. ~ 2022.1.20. (합의 후 기간연장)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인력 지원 -학교폭력 의료 상담 인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부 지원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붙임 : 협약서 2부

2020. 1. 21.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지방변호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전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능력 활성화로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협력 및 지원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청과 변호사회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원칙)

- ① 본 협약사항은 상호 신뢰·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 협의를 통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만료 30일 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협력 및 지원분야) 양 기관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지원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청의 협력 및 지원사항

1.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추천 요청
2.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3.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지급

② 변호사회의 협력 및 지원사항

1.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인력 지원
2.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인력 지원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부 지원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및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업무 협조를 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비밀유지 의무는 본 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 동 호

설 동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서 정 만

서 정 만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의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의사회(이하 ‘의사회’이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료 상담 지원 등 협력 활성화로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협력 및 지원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청과 의사회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원칙)

- ① 본 협약사항은 상호 신뢰·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 협의를 통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만료 30일 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협력 및 지원분야) 양 기관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지원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청의 협력 및 지원사항

1.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추천 요청
2.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의료 상담 요청
3.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지급

② 의사회의 협력 및 지원사항

1.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인력 지원
2. 학교폭력 의료 상담 인력 지원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부 지원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및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업무 협조를 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비밀유지 의무는 본 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 동호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설 동호

김영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020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1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업무협약 (대전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서구청, 대전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20.6.1.	2020.6.1. ~ 2021.5.31. (합의 후 기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시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현황을 분석, 위기청소년 종합범죄예방정책 수립 및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합동 거리상담, 청소년 유해지역 환경 정비 및 CPTED 활용 범죄 요인 제거- 민·관·경 협업으로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에 동참, 홍보활동, 제도·법령 개선노력, 상호협력, 필요자료 공유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붙임 : 협약서 1부

2020.6.1.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업무 협약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구청, 대전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호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공동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각 기관의 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시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현황을 분석, 위기청소년 종합범죄예방정책 수립,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
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합동 거리상담, 청소년 유해지역 환경 정비 및 CPTED 활용 범죄 요인 제거
3. 민·관·경 협업으로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에 동참 △홍보활동
△제도·법령 개선 노력 △상호 협력 △필요자료 공유

제3조(협약의 이행) ① 각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추진사항 공유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의장을 마련한다.

②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자료의 공유) 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각 기관은 협약서 4부를 각각 서명하여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1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해 용



대전광역시서구청

구청장

장 종 태

장종태



대전서부경찰서

서장

곽 창 용

1388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민숙

김민숙

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20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1. 협약체결 : 2건

2. 주요내용

협약명 (기관)	체결일	협약기간	협약 주요내용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업무협약 (진원작은도서관, 만년뜰작은도서관)	2019.12.26.	2020.1.2. ~ 2020.12.31. (합의 후 기간연장)	- 작은도서관 운영컨설팅 지원 -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원봉사자 교육 - 기타 상호 간에 협조 사항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업무협약 (목동마미뜰 작은도서관)	2020.2.17.	2020.2.17 ~ 2020.12.31.	

3. 지방의회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해당없음

4. 붙임 : 협약서 3부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진원작은도서관 간의 협약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진원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 ①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 ② 자원봉사자 및 운영 컨설팅을 위한 상호 협력
- ③ 기타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제3조(협약 기간)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추후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이상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26.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황선혁

황선혁

진원작은도서관

관장 정진일

정진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만년풀작은도서관 간의 협약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만년풀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 ①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 ② 원화전시 및 운영 컨설팅을 위한 상호 협력
- ③ 기타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제3조(협약 기간)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추후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이상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26.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황선혁

황선혁

만년풀작은도서관

관장 윤미연

윤미연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목동마미뜰작은도서관 간의 협약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목동마미뜰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 ①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강사파견 및 제료지원)
- ②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컨설팅 협력
- ③ 기타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제3조(협약 기간)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한다.

이상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2. 17.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황선혁

황선혁

목동마미뜰작은도서관

관장 이금하

이금하

업무협약 해지 현황 보고서

2023. 7. 1.

중등교육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해지현황 보고

1. 협약해지 : 1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협약기간	해지일	해지 사유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육군발전협회 대전세종지부)	2017. 5. 1. ~ 해지시까지	2020. 5. 1.	- 양 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실적 미흡 - 통일교육 관련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3. 향후 조치 계획 : 행정적·법적 조치 필요 없음

4. 붙임 : 해지 요청 공문 1부.

함께해요 부페첨산 실천해요 청렴약속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신 (사)육군발전협회 대전세종지부장

(경유)

제목 2020학년도 업무협약 해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4918호]에 의거 귀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해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 업무협약체결명: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사)육군발전협회(대전세종지부)
 - 나. 업무협약 체결일: 2017. 5. 1.
 - 다. 업무협약 해지일: 2020. 5. 1.
 - 다. 업무협약 해지 사유
 - 양 기관 간 실적 미흡
 - 나라사랑 캠프 등 통일교육 관련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끝.

대전광역시교육감

★민주시민교육 윤명선 2020.04.09.
팀장 종등교육과장 고유빈



협조자

시행 종등교육과-7458 () 접수 ()
우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대전광역시교육 / <http://www.dje.go.kr>
전화 042-616-8391 / 전송 042-616-8349 / msun346@korea.kr / 비공개(5,6)

과학직업정보과 2020 상반기 업무협약 해지현황 보고

1. 협약해지 : 2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협약기간	해지일	해지 사유
고교 · 대학연계 R&E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선문대학교)	2016.6.21. ~ 해지시까지	2020.1.23.	-선문대학교와 대전지역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원활한 업무협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해지함
지역 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5개 관계기관 협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 국립중앙과학관, 경주교육지원청)	2015.4.24. ~ 해지시까지	2020.4.6.	-지진(경주, 2016) 발생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로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지함

3. 향후 조치 계획 : 행정적 · 법적 조치 필요 없음

4. 불임 : 해지 요청 공문 2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신 선문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요청] 선문대-대전시교육청 간 과학교육 업무 협약 해지 의견 제출

1. 근거: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2017. 7. 7. 시행)
 2. 선문대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한 과학교육 관련 업무협약 이행이 양 기관의 거리 등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지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협약일시: 2016. 6. 21.
- 나. 협약내용: 고교대학 연계 R&E 과학프로그램 운영 등
- 다. 주관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끝.

대전광역시교육감

*경력사	오여환	과학영재담당관 학관	황성환	과학직업정보과 장	전결 2020.01.23. 정용재
명조자					
시행 과학직업정보과-644	()	접수	()		
우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대전광역시교육 청)			/ http://www.dje.go.kr	
전화 042-616-8352		/전송 042-616-8399	/ranmio@korea.kr		/공개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요청] 「지역 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5개 관계기관 협약」 해지 의견 제출

1. 근거: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2017. 7. 7. 시행)
2. 「지역 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5개 관계기관 협약」이 자진(경주, 2016) 발생 이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지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 국립중앙과학관,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나. 협약일자: 2015. 4. 24.
다. 협약내용: 지역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교외 체험학습 활성화 등
라. 회신기한: 2020. 4. 3.(금)까지. 끝.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역시

박은주

과학영재담당경
학관 이명우

과학직업정보과
장 전철
2020.03.23.

점출처

형조자

시행 과학직업정보과-2546 (2020. 3. 23.) 접수 ()

우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대전광역시교육청) / <http://www.dje.go.kr>

전화 042-616-8354 / 전송 042-616-8399 / e)0317@korea.kr / 비공개(5)

대전교육정보원 2020 상반기 업무협약 해지현황 보고

1. 협약해지 : 1건

2. 주요내용

협약명(기관)	협약기간	해지일	해지 사유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KAIST 융합 교육연구센터)	2018.4.6. ~ 해지시까지	2020.4.5.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 지원인력 부족 예) 2019년 9~10월 특색사업 ‘스티브잡스 따라잡기’ 정보진로체험교육 운영 시,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장에게 수차례 강사 지원을 요청하였나 강사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였음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 및 연구 지원 요청이 없었음 - ‘스티브잡스 따라잡기’ 특색사업 폐지 (2019.12.)

3. 향후 조치 계획 : 행정적 · 법적 조치 필요 없음

4. 붙임 : 해지 요청 공문 1부



대전교육정보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종료

1. 관련: 정보지원부-473(2018.3.29.)
2. 2018년 대전교육정보원과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2020. 4. 5.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호 기관이 업무협약을 종료하기로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업무협약을 종료하고 불임과 같이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에 알리고자 합니다.
 - 가. 업무협약명: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협약
 - 나. 기관: 대전교육정보원,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
 - 다. 종료일: 2020. 4. 5.
 - 라. 사전 협의 담당자: 대전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송나영,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 연구원 맹준희
 - 마. 사전 협의 결과: 상호 기관 협무 협약 종료에 동의
 - 바. 종료 사유:
 - 2019년 추진 성과 없음
 - '스티브잡스 따라잡기' 특색 사업 폐지(2019. 12.).
 - 사. 안내 방법: 등기 발송.

불임 업무협약 종료 안내문 1부. 끝.

★교육연구사 송나영 정보지원부장 박귀미 원장 2020.03.05.
이송욱

협조자

시행 정보지원부-413 () 접수 ()
우 34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역대로 507-115(가정동, 대전교 융정보원) / <http://dei.djsch.kr>
전화 042-865-6017 / 전송 865-6000 / sny40@korea.kr / 비공개(5.6)